

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10일	
신청인	성명(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)		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		
	전화번호				
	주소				
차고지 확인 내용	토지 명세	차고지 용도(화물자동차의 종류 기재)			
		소재지			
		지목	토지 면적(m ²)	차고지 면적(m ²)	
	소유자	성명(법인명)		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	
		전화번호			
		주소			
	임차인	성명(법인명)		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	
		전화번호			
		주소			
		임차기간		~ (년 월)	
운송사업 허가 관할기관					

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5조 및 제41조의11에 맞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청인(대표자) 제출서류	차고지의 임대계약서(임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1부	수수료
특별자치시장·특별 자치도지사·시장· 군수·구청장 확인사항	1.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) 2.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(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) 3. 토지이용계획정보(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)	특별자치시장·특별 자치도지사·시장· 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금액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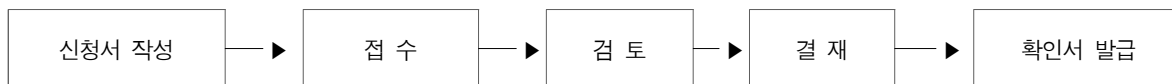
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주민등록표 초본에 대해서는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

신청인

처리기관: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(차고지 설치
확인 담당 부서)